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04

발의연월일: 2025. 2. 12.

발 의 자:이정문・이훈기・이재관

박 정・김남근・한민수

이인영 • 문진석 • 이연희

김영배 • 이상식 • 민병덕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주요 영업의 양수도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지배주주나 기업집단의 이익을 고려하는 반면,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제기되어 왔음.

특히, 대주주 및 특별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한 후 공개매수를 강제하지 않는 현행 규제는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법인의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개매수 의무를 강화하고, 합병 및 물적분할 시 공정한 가치 평가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특정 주주가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매 수 가격은 선행매수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 이상 으로 설정(안 제133조제4항, 제141조제3항 신설).
- 나. 합병 등의 가액 산정 시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공정한 가지 평가 의무를 부과하고, 합병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된 경우 기업 및 경영진의 연대 배상 책임을 명시하며, 계열회사 간 합병 시주주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안 제165조의4제2항부터 5항까지 신설).
- 다.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권상 장법인의 주주에게 모집주식 총수의 35% 이상을 우선 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항 추가(안 제165조의6제5항, 제165조의18제10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매수등(이하 "선행매수"라 한다)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행매수 이후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서 기보유 주식등의 수를 공제한 잔여주식 전부에 대하여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33조제4항에 따른 공개매수가격은 선행매수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제145조 중 "제133조제3항"을 "제133조제3항 · 4항"으로 한다.

제16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 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7항"으로, "방법 등"을 "방법, 제5항 에 따른 검사인의 자격 요건 등"으로 한다.

- ②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이라는 입증책임은 주권상장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을 말한다)이 부담한다.
- ③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합병 등을 한 주권상장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설립된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을 말한다)과 그 법인의이사, 감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었을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항의 책임이 있다.

⑤ 주권상장법인이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합병비율의 산정방법 및 그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법」 제522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5조의6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분할에 한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고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해당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상장하려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상법」제418조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법인의 주주(대주주는 제외한다)에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을 우선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5항에 따른 주식의 배정 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분할된 주권상장법인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65조의18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16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물적 분할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대주주는 제외한다)에게 주식을 배정한 경우 제445조제19호 중 "제133조제3항"을 "제133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매수등(이하
	"선행매수"라 한다)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
	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
	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
	의 2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
	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u>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u>
	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행
	매수 이후 해당 회사의 발행주
	식 총수에서 기보유 주식등의
	수를 공제한 잔여주식 전부에
	대하여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
	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에서의 경쟁매매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의 경우에는 증권시장 밖에서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 (생략)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7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제133조 기 제3항 또는 제134조제1항 · 제2 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그 주식(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등(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및 제4항
,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33조제4항에 따른 공개
매수가격은 선행매수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u>제133조</u>
<u>제3항 • 4항</u>

할 수 있다.

(생 략)

<신 설>

<신 설>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 ②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자의 이 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 는 경우에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이라는 입증책임은 주권상 장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주권상장법 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을 말 한다)이 부담한다.

> ③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 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합병 등을 한 주권 상장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주권상장법 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을 말 한다)과 그 법인의 이사, 감사 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신 설>

<신 설>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 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 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 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결정되었을 경우 연대하여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항 의 책임이 있다.
- ⑤ 주권상장법인이 그와 계열 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 병 등을 하는 경우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 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합병비 율의 산정방법 및 그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법」 제5 22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전 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 구할 수 있다.
- ⑥ (현행 제2항과 같음)

<u>7</u>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u>제2항</u>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u>제3항</u>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u>방</u>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	<u> </u>		
<u>8</u> -			<u>제7</u>
<u>하</u>			
<u>방법,</u>	제5항에	따른	검사인의
<u>자격</u>	<u>요건 등</u>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 행과 같음)

⑤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분할에 한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고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주권(해당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상장하려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법인의 주주(대주주는 제외한다)에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주

<신 설>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 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u>식 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을</u>
우선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다
만,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
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u>하다.</u>
⑥ 제5항에 따른 주식의 배정
<u>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u>
분할된 주권상장법인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
<u>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2 2/9 2.2 2.2 2.2 2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 한 조치)

<신 설>

- 11. ~ 25. (생략)
-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18의4. (생략)
 - 19. 제133조제3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

20. ~ 48. (생 략)

<u>10의2. 제165조의6제5항을 위반</u>
하여 물적 분할된 주권상장법
인의 주주(대주주는 제외한
다)에게 주식을 배정한 경우
11. ~ 25. (현행과 같음)
제445조(벌칙)
<u>.</u>
1. ~ 18의4. (현행과 같음)
19. <u>제133조제3항 · 제4항</u>
20 ~ 48 (현행과 같음)